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1의 기준(개별 화물)에서는 최대적재량 1.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조례로서 정하는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의 조례에서는 용달화물자동차(1톤이하)의 차고지 면제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성주군 내의 열악한 운송사업자의 의무면제를 통해 지역 운송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적용범위 삭제(안 제2조)

○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확대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제13조 및 별표1

○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'18. 11. 02. ~ '18. 11. 12.)

○ 규제심사 : 심사완료[기획감사실-8271(2018.10.18.)]

○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[주민복지과-60882(2018.11.2.)]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으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.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는 운송사업자를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경북 도내 12개 시·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 기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영세한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